

방사선작업종사자 생애누적 피폭선량 통합관리

1 대상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 받은 자 중 의료분야 방사선작업 종사자를 관리하는 기관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2 목적

- 본 안전공지는 원자력안전법 개정('21.03)에 따라 피폭선량 분산 관리·축소 및 기록 누락·소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피폭선량 통합관리 운영체계가 조속히 정착 되어 개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의료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운영의 문제점**
 - 의료분야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시설의 목적별로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 등의 여러 법의 중복적용을 받음에 따라 선량계를 시설별로 구분하여 착용해야 하고 그 피폭정보는 법 소관 부처별로 각각 보고해야 함
 -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정보는 개인별로 생애 누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각기 분산 관리하고 있어 이직 시 이전 정보소실, 개인 별 복수 선량계 관리 어려움을 야기함
- **의료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통합관리 방안**
 - 타 법령에 따른 피폭정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별 총 피폭량이 단일 선량계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이직 시 이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생애 누적피폭선량이 관리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21.3)
 - (개선 전)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장소를 옮길 때마다 선량계를 바꿔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각 부처는 피폭선량을 따로 관리하여 전체 피폭선량을 한번에 알기 어려움
 - (개선 후)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장소와 관계없이 하나의 선량계를 착용하게 되어 편리하고 각 부처는 종사자의 총 피폭선량을 공유하여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제122조(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3의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내용을 포함하여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할 것.

제127조(보고)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라 별표 5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같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서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같은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피폭선량 관리센서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 해당 시행규칙 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협의 검토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임

- 참고사항

- [보도자료](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방사선작업종사자, 생애누적 피폭선량 통합관리

4 조치사항

- 해당 규제임장에 대한 시행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일자('21.03.04.)를 기준으로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